

제 1233호
1985.12.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보원
편집인 : 공보관리과 우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계	보도국장	공보국장	공보관	월	공
				일	람

시보

차 례

◎ 조 례

- 제 2047 호 : 서울특별시도로부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 4
- 제 2048 호 : 서울특별시올림픽공원 및 올림픽선수촌등 건설에 따른
이주대상자의 취득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4
- 제 2049 호 :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과세면제조례 5
- 제 2050 호 : 서울특별시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과세면제
에 관한 조례 5
- 제 2051 호 :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6
- 제 2052 호 :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7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053 호 : 병원공사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7
제 2054 호 : 서울특별시원호대상자의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8
제 2055 호 :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과세면제에 관한특별조례	8
제 2056 호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9
제 2057 호 : 서울특별시수도권내공단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제 2058 호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10
제 2059 호 :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
제 2060 호 :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0
제 2061 호 :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	11
제 2062 호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시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	11
제 2063 호 : 서울특별시통신업에대한등록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	12
제 2064 호 :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	12
제 2065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3

규 칙

제 2129 호 :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3
---------------------------------	----

교육규칙

제 298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14
제 299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표창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7
제 300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의위임에관한변호 사의보수규정중개정규칙	17

고 시

제 896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9
제 89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9
제 898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9
제 899 호 : 1985 년도서울특별시제 1 회추가경정예산	20

제 900 호 : 1986 년 도 서울 특별 시 세 입 세 출 예 산	20
제 901 호 : 도시 계획 사업 (학교) 사업 시행 허가 변경	21
제 902 호 : 민영 주택 전 설 사업 계획 승인	22
제 903 호 : 민영 주택 전 설 사업 계획 승인	22
제 904 호 : 민영 주택 전 설 사업 계획 승인	22
제 905 호 : 도시 계획 사업 (일 단 의 공 업 용 지 조 성 사 업) 시행 허가 변경	23
제 906 호 : 도시 공원 시 설 시 용 료	24
제 907 호 : 도심 재 개발 사업 시행 기간 변경 인 가	24
제 908 호 : 도심 재 개발 사업 계획 변경 결정 (건축 계획)	24
◎ 구 청 고 시	
종로구 제 20 호 : 광고 물 계획 정 비 지 구 지 정	25
중구 제 16 호 : 광고 물 계획 정 비 지 구 지 정	25
◎ 공 고	
제 774 호 : K S 표 시 정 지 처 분 해 제	26
제 775 호 : 공 공 하 수 도 사 용 개 시	26
제 777 호 : 도시 계획 사업 (학교) 공 사 완 료	28
제 779 호 : 도시 계획 사업 (도 로 , 하 수 도) 실 시 계획 공 란	29
제 780 호 : '86.88 대 회 관 광 객 용 숙 박 업 소 지 정	30
제 781 호 : 신 문 로 구 역 제 2 지 구 재 개발 사 업 시 행 인 가 를 위 한 공 란	42
제 782 호 : 환 지 계획 일 부 변 경 공 란	43
◎ 구 청 공 고	
강서 제 80 호 : 특 정 열 사 용 기 자 재 의 시 공 업 처 분	43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47호

서울특별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손괴원인자 부담금의 잠정 폐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손괴원인자 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그 징수를 잠정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올림픽공원 및 올림픽선수촌등 건설에 따른 이주 조례대상자의 취

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48호

서울특별시올림픽공원및올림픽선수촌등
건설에따른이주대상자의취득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올림픽공원 및 올림픽선수촌(아시아선수촌 올림픽 기자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설에 따라 동 부지로 편입되어 이주하는 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올림픽공원 및 올림픽선수촌 부지로 편입되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을 받고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매입권을 인정한 자가 당해 아파트(부속토지포함)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가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면제

에 관한 사항은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면제신청등)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시세과세 면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2049 호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과세면제조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시세과세면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보조금 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상이용사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2050 호

서울특별시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제목중 “상이용차”를 “국가유공자”로 한다.

제1 조중 “상의의용차”를 “국가유공자 자활차”으로,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 조제1항 본문중 “상의의용차”를 “국가유공자 자활차”으로 “동의용차”를 “동자활차”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자동차:자동차세, 면허세”를 “자동차: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자동차세와”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및”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2051호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조제1항 “나”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로서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예) 이 조례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이후에 시행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2052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 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병원공사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2053호

병원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병원공사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과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054호

서울특별시원호대상자의주택및
농지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취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1 조 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과세면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 및 등기하는 50 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이 대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50 제곱미터 초과하는 주

택의 취득시는 그 초과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제 1 항 중 “지방원호지청장”을 “지방보훈지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055호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관한특별조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소유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영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056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권내 공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영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057호

서울특별시수도권내공단에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수도권내 공단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영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058 호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
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059 호

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

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060 호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철도건설 공유지분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61 호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철도건설 공유지분 분

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62 호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과세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인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통신업에 대한 등록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년 12 월 30 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63 호

서울특별시 통신업에 대한 등록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통신업에 대한 등록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년 12 월 30 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64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에대한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재

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준공 인가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공 포 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최열곤

◎서울특별시조례제 2065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 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3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29 호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 220 원 ” 다음에 “ 250 원 ” 을 추가하고, “ 13 종 ” 을 “ 14 종 ” 으로 한다.

별지 종류란의 “ 220 원 ” 다음에 “ 250 원 ” 을 규격란에 “ 가로 25 mm X 세로 22 mm ” 을 색채란의 “ 하늘색 ” 다음에 “ 다갈색 ” 을 각각 추가하며, 제란의 “ 13 종 ” 을 “ 14 종 ”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포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곤

교육규칙

◎교육규칙제 298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근무
사항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 ① 각

기관에서는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 1 호 서식) 를 비치하여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 4 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외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근무상황카드의 날인·서명)

①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은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중 "퇴청"을 "퇴근"으로, 동항 제 3 호중 "익일"을 "다음날의"로 동조 제 2 항중 "전항"을 "제 1 항"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하여, 동조를 제 4 조의 2로 하며,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 (휴가 및 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 2-1 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 3 호 서

(별지 제 2-1 호 서식)

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내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내의 출장명령부(별지 제 3-1 호 서식)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의 제목과 본문상 "퇴청"을 "퇴근"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 무 상 황 부

월 일	종 류	일 시	직 위	성 명 · 인	사 유 또는 용 무	합 의	결 제 자		
						장			장

(공 포 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표창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최열곤

◎교육규칙제 299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표창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표창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제 1 항중 “관리제”를 “사무제”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공 포 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
는 소송의 위임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곤

◎교육규칙제 300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위임에 관한 변호
사의 보수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
는 소송의 위임에 관한 변호사의 보
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사례금) 지급한 착수금의 100
분의 150 에 해당하는 액에 승소비
율을 곱한액으로 한다. 다만, 소위하
(쌍불취하포함)의 경우는 착수금의
반액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6.1.1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전에 소송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중인 사건중 이
규칙 시행후 승소한 사건의 사례금
은 이 규칙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
하여 지급한다.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표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비 고
	내용 (소송물가액)	착 수 금	
민 사 소 송	1. 신청사건	60,000 원 (단, 경매는 100,000 원)	
	2. 본안사건		
	1) 200 만원미만	100,000 원	
	2) 200 만원이상	150,000 원	
	3) 500 만원이상	240,000 원	
	4) 1,000 만원이상	400,000 원	
	5) 3,000 만원이상	700,000 원	
	6) 5,000 만원이상	900,000 원	
	7) 1 억원이상	1,500,000 원	
	3. 중요사건	1,000,000 원	
	(소가가 1 억원 미만으로 당위원회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1,500,000 원	
	4. 환송심	원심의 상	
행 정 소 송	1. 신청사건	100,000 원	
	2. 본안사건	300,000 원	
		(단, 소가액 3 천만원 이상은 민소와 동일)	
	3. 중요사건	1,000,000 원	
	(소가가 1 억원미만으로 당위원회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1,500,000 원	
공 통	1. 인지대	실 액	현장점 증 및 감성시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 원 원을 별도로 지급한 다.
	2. 송달료	실 액	
	3. 검증비, 감정비	실 액	
	4. 출장여비	국내여비규정제 1 호적용	
	5. 기타	실 액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89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주)범진주택 대표이사 박종수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규모(변경승인내요참조)
가. 사업시행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31번지 42호외 9필지
나. (변경)승인 개요

주택종별	규 모		변경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 면적(㎡)	건폐율 (%)	용적율 (%)	사 업 비 (천 원)
	층	동 세대							
연립주택	3	2 48	을	2,965.08	887.04	3,144.48	29.91	87.12	1,676,607
"	3	2 48	으로 상 동	1,079.28	4,155.84	36.39	105.11	2,013,600	

단, 가타 변경내역 생략함.

4. 사업기간: 1985.10.4.-1986.5.

◎서울특별시고시제 89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지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278호.

나. 승인 개요

- (1) 규 모: 연립주택 3층 1동 24세대
- (2) 대지면적: 1,634.20
- (3) 건축면적: 637.22
- (4) 건축연면적: 2,761.50
- (5) 건 폐 율: 38.99 %
- (6) 용 적 율: 116.97 %
- (7) 사 업 비: 1,319,118,000 원

4. 사업기간: 1985.12. - 1986.8.30

◎서울특별시고시제 89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2. 사업주체: 태건건설(주)
대표이사 차종복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규모:
승인개요 참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24 호 (85.1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권 관
각구 신림동 산 197-33 일대내 개화

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 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한다. 2. 관제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85년 12월 30 일 서울특별시장
---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지 점	종 점
신 설	소로	3	6	66	신림동산 197-33	신림동산 197-31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899 호

'85서울특별시제 1 회추가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5년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추
가경정예산 및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특 별 회 계

- 국민주택비 : 137,830 백만원
- 주택재개발비 : 37,072 "
- 특정건축물정리비 : 11,619 "
- 목동, 신정동개발사업비: 354,581 "
-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 132,155 "
- 수 도 사 업 : 211,407 "
- 병 원 사 업 : 7,310 "

- 지하철 운수사업 : 63,953 백만원
- 주차장 시설비 : 12,373 "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
4,253 백만원

○ 기 금

- 도시재개발 사업기금 : 70,237 백만원
- 재해구호사업기금 : 4,036 백만원

◎서울특별시고시제 900 호

'86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을 지방
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연 번	회 계 별	예 산 액
1	일 반 회 계	983,552 백만원
2	특 별 회 계	1,216,855 "
	• 국민주택비특별회계	119,340 "
	•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	23,322 "
	• 유료도로비 특별회계	9,527 "
	• 특정건축물 정리비 특별회계	4,454 "
	• 목동·신정동 개발사업비 특별회계	363,717 "
	•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80,000 "
	• 올림픽사업비 특별회계	165,455 "
	• 수도사업 특별회계	223,025 "
	•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129,650 "
	• 병원사업 특별회계	6,133 "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377 "
	•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13,459 "
	• 사용료 수수료 통합장수 특별회계	1,523 "
	• 새마을소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87 "
3	기 금 운 용 제 회	
	• 도시재개발 사업기금	58,845 "
	• 재해구호기금	1,202 "

◎서울특별시 고시제 901 호

한다.

도시계획사업(학교)사업시행허가변경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2 호 (85.4.6)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된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및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

-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 명칭: 이화여자대학교 시설확충
 다. 준공예정일 당초: 85.12.31.
 변경: 86. 6. 30.
 라. 기타사항: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 90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년 12 월 30 일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계광건설(주)
대표이사 : 육 동 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강동구 천호동 214-47 산36-1
나. 대지면적 : 2,331.15 m²
다. 용 도 : 연립주택
라. 규모 : 3층 3동 33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마. 건축연면적 : 2,683.20 m²
4. 사업시행기간 : 1985.12-1986.
첨부 : 1) 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90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하

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년 12 월 30 일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계광건설 (주)
대표이사 : 육 동 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강동구 천호동 217-69, 217-95
나. 대지면적 : 1,211.0 m²
다. 용 도 : 연립주택
라. 건축연면적 : 1,393.68 m²
마. 규모 : 3층 1동 12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85.12-1986.
첨부 : 1) 설계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90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조서 제 33 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동구 능동 97-7
정우주택(주) 장 수 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가. 위치 : 상계동 1104-2 와 1 필지
나. 면적 : 1,895.69 m^2
다. 규모 : 연립 · 3 층 · 2 동 · 33 세 대
4. 사업시행기간 : 1985.12 - 1986.10.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사업 시행허가 변경
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85 년 12 월 30 일

서울 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고시제 905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5 호 (73.4.
24) 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사
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에 대
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895 호 (85.
12.28) 에 의거 사업시행지 변경결
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라. 시행면적 (m^2)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가리봉동 494-
4 일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제 3

한국수출산업공단

다. 시행자 주소, 성명 - 구로구 구로
동 188-5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김 기 배

구 분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운 동 장)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면 적	1,210,678	1,137,461	20,063	16,988

마. 시행기간

- 1) 당초 - 73.4.30 - 85.12.31.
- 2) 변경 - 73.4.30 - 85.6.30.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성명, 주소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 906 호

도시공원 시설사용료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 6 조 별

표 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도 시 공 원 시 설 사 용 료

증 별	시 설 명	사 용 구 분	금 액	비 고
운동시설	서울대공원	평일 면당 1시간	3,000	
	정 구 장	토·일·공휴일 면당 1시간	4,500	

◎서울특별시고시제 907 호

도심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5 호 (82.3.19)로 재개발사업 시행허가된 양동구역 제 6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 21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내용

- 당 조 : 82.3.19-85.12.31.
- 변 경 : 82.3.19-86. 3.31.
- 변경사유 : 공공시설설치 미완료 및 관리처분계획미수립

◎서울특별시고시제 908 호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건축계획)

1.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제 5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사업 신문로 제 1 지구, 제 2 지구의 사업계획 (건축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 5 조 제 6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 15 호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건축계획) 조서 : (별첨조서)
나. 관계도면 : 별첨 (생략)

구 청 고 시

◎종로구 고시제 20 호

광고물계획 정비지구 지정고시

광고물등 관리법 제 3 조 등 제 4 조와 서울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5 조 (금지지역등) 및 제 7 조 (계획정비지구 지정)의 규정에 의거 관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동규칙 제 17 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

1985 년 12 월 30 일

종 로 구 청 장

다 은

가. 광고물 정비지구

- 1) 세종로 : 비자 - 세종문화회관 - 광화문 노선별 미관지구내
- 2) 태평로 : 세종로 4 거리 - 구경계노선별 미관지구내
- 3) 사직로 : 사직동로타리 - 동십자각노선별 미관지구내

4) 을곡로 : 동십자각 - 안국동로타리미관지구내

나. 정비내용 : 현수막, 프랑카드 종류
의 광고물의 설치금지

다. 광고물 정비지구 도면 : 별첨 (도면 생략)

라. 관계도서는 종로구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중구고시제 16 호

광고물계획 정비지구 지정고시

광고물등 관리법 제 3 조, 등 제 4 조와 서울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5 조 (금지지역등) 및 제 7 조 (계획정비지구 지정)의 규정에 의거 관내 일부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동 규칙 제 17 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

1985 년 12 월 30 일

중 구 청 장

다 은

가. 광고물 정비지구

- 1) 태평로 (남대문-시청-구경계
노선별 미관지구내)
나. 정비내용: 현수막, 프랑카드 종류
의 광고물의 설치 금지
다. 광고물 정비지구 도면: 별첨 (도
면 생략)
라. 관계도서는 중구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774 호

KS 표시 정지처분 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584 호 (85.10.4)
호로 KS 표시 정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 처분을 해제
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
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주)법일금속
2. 대표자 : 김 상 은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89
4. 규격번호 : KSC 2508
5. 품 목 명 : 수지입 뎀납
6. 종류등급 : RS 40-2.0A
7. 해제일자 : 1985.1.4

◎서울특별시공고제 775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인가를 받
아 시행한 공공하수도 설치가 완료
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
거 15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
람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공 고 및 공 략 개 요

연번	위 치 (공사명)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 월 일	배 수 구역	구별
1	남성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D=600 L=165	85.12.27	반 포	합류식
2	상도동-중앙대간 도로개설공사	D=500-1,000 L=1,285	"	노량진	"
3	본동 408-487 도로확장	D=700 L=85	"	"	"
4	사당 1동 1022-1036 간 하수도	D=450-800 L=400	"	반 포	"
5	" 321-1012 간 하수도	D=800 L=215	"	"	"
6	사당 4동 278 주변	D=600 L=155	"	"	"
7	신대방 1동 607-645 하수도	D=450-800 L=572.5	"	안양천	"
8	약수로외 1개소 하수도	D=450 L=265	"	"	"
9	상도 3동 189 외 1개소 포장공사	D=450 L=117.5	"	"	"
10	상도 4동 214 외 1개소 포장	D=600-1,000 L=317.5	"	"	"
11	신대방 2동 360 주변 포장	D=450 L=80	"	"	"
12	상도 1동 46-103 간 포장	D=450-800 L=600	"	"	"
13	대방동 344 주변 하수도	D=600 L=112.5	"	노량진	"
14	" 412 주변 포장	D=600 L=250	"	안양천	"
15	상도 1동 7번지 주변 하수도	D=450 L=630	"	"	"
16	사당 4동 2.3 주변의 1개소 하수도	D=600 L=122.5	"	반 포	"
17	사당 3동 141-161 간 하수도	D=450 L=115	"	"	"
18	동작동 102-18~102-22 간 포장	D=600 L=192.5	"	"	"
19	사당 2동 127 하수도	압거 (1.5×1.0) L=93 D=600 L=20	"	"	"
20	대방로 346 번지 도로정비	D=600 L=102.5	"	노량진	"
21	흑석동 79 주변 도로포장	D=450 L=102.5	"	"	"
22	신대방 1동 646-605 간 도로정비	D=450-600 L=115	"	안양천	"
23	상도 1동 134 외 1개소 하수도	D=450 L=117.5	"	"	"
24	" 435-3~429-7 간 하수 도	(압거 1.2×1.0) = 34 D=800 L=60	"	반포천	"
25	신대방 1동 618 주변 하수도	D=700 L=177.5	"	안양천	"

연번	위 치 (공사명)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 월 일	배 수 구 역	구 설
26	상도 2 동 156 주변 하수도	D=1,000 L=150	85.12.27	안양천	합류식
27	사당동 89-17~92-2 간 도로포장	D=450 L=77.5	"	반포천	"
28	" 85-89 간 도로포장	D=600 L=40	"	"	"
29	노량진 1 동 119 주변 수해복구	D=450-800 L=325	"	노량진	"
30	중앙개발진입로 하수도	D=800 L=72.5	"	반포천	"
31	상도 1 동 55 번지 하수도	D=450 L=315	"	안양천	"
32	본동 40b 주변 소방도로확장	D=700 L=100	"	노량진	"
33	사당 3 동 141-161 포장	D=450-600 L=450	"	반포천	"
34	신대방 2 동 360 주변 하수도	D=450-800 L=539	"	안양천	"
35	약수로정비공사와 1 개소 포장	D=450 L=62	"	"	합류천
36	사당동 - 봉천동간 도로개설	암거 (2×2) L=120	"	반포천	"
37	신대방 1 동 695 일대 하수도	암거 (1.5×1.0) L=342	"	안양천	"
38	본동 225 수해복구	D=900 L=27.5 암거 (1.8×1.8)=28 암거 (1.5×1.5)=97	"	노량진	"

◎서울특별시 공고제 77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공사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77 호 (84.12.24) 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변경된 당구 관내 이태원동 214-4 외 1 필지(기존)유성전자공업 학교 증축 488㎡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동법

85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년 12월 30 일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14-4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 2) 명칭: 유성전자공업학교 증축

다. 사업시행규모

- 1) 사업시행면적(대지면적): 1,491㎡
- 2) 건축면적: 계: 2,648.24㎡
증축: 488㎡
기존: 2,160.24㎡

라.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14-4
학교법인 청지학원

성명: 이사장 박태영

마. 사업의 시행기간: 1984.3.12-1985.8.5

바. 공사완료도면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77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계 획 공 랑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69.1.18)
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천호동 161 - 천호대교간 도로개설 공사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
도)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

법 제 25조의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가름한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토목과

(전화: 478-0546)

나. 공람기간: 85.12.30-86.1.12
(14일간)

198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관

공 랑 개 요

1. 사업명: 천호동 161-천호대교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 성내동 163-32, 163-34
3. 사업규모
도로개설 B=6-8m L=91m
도로포장 A=5.59a
하수도 D=600mm L=92.5m
4.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1년
5.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
(강동구청장)
6.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제출 바란다.

트 지 조 서 및 지 장 물 조 서

위 치	지 목	면적(㎡)	품명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성내동 163-32	잡	303		용산구 청파동 2가 76-2 이충원	
" 163-34	"	96		" "	
" 163-32		8㎡	담장	" "	
" 163-15		10㎡	"	" "	

◎서울특별시공고제 780 호

'86, '88 대회관광객용숙박업소지정공고

보건사회부 고시 제85-75호 및 고

통부 고시 제85-9호에 의한 '86, '88
대회 관광객용 숙박업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한다.

198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86, '88 대회 관광객용 숙박업소 (여관) 명단

지역	번 호	업 체 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종로	1-1-1	세 화 장	호텔갑	종로 6가 36	문 병 옥	37	17	20	764-7431-2	
"	1-2-2	삼 호	"	창신 436-73	최 영 란	42	7	35	764-3151-9	
"	1-3-3	고 궁 장	"	원남 170-1	유 준 호	48	24	24	741-0831-5	
"	1-4-4	에메랄드	호텔을	낙원 75	장 세 월	32	16	16	743-2001-5	
"	1-5-5	백 천	"	봉익 7-1	박 영 회	40	16	24	742-6671-2	
"	1-6-6	파 고 다	"	낙원 150-1	윤 병 도	34	17	17	743-1411-4	
"	1-7-7	오 성	"	" 149	김 기 조	27	15	12	363-0353-4	
중구	2-1-8	신 서 울	호텔갑	신당동 775	전 영 제	52		52	234-3121-8	
"	2-2-9	신 신	여관갑	북창동 93-43	김 의 수	32	18	14	777-9331	
"	2-3-10	하 남	"	정 동 16-10	서 재 식	42	30	12	777-7181	
"	2-4-11	파 레 스	"	회현동 1가 92-6	이 순 회	32	7	25	777-7731	
"	2-5-12	온 천	"	" 133-1	박 방 정	30	4	26	778-1356-7	
"	2-6-13	세 일 장	"	필동 3가 5-1	정 용 택	31	16	15	269-0131-4	
"	2-7-14	대 한	"	" 2가 18-12	여 분 순	25	13	12	267-8252	
"	2-8-15	울 지 장	"	울지로 3가 291	고 성 대	55	25	30	266-1131-3	
"	2-9-16	귀 빈 장	"	" 7가 103	김 등 찬	26	12	14	269-9061	
"	2-10-17	성 화 장	"	광희동 1가 155	김 구 순	24	12	12	265-7111-3	

지역	번 호	업 체 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중구	2-11-18	파크 장	여관갑	장충동 2가 7-1	심재인의 1	32	8	24	269-5101-5	
"	2-12-19	새아리랑	"	남학동 16-1	표 재 관	30	12	18	267-8167-8	
용산	3-1-20	그레이스	호텔갑	한강로 2가 210-1	정 훈 기	53	18	35	793-2151-3	
"	3-2-21	가 야	"	갈월동 98-11	문 석 용	51	19	32	798-5101-10	
지역	번 호	업 체 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성동	4-1-22	전풍호텔	호텔갑	도선 58	전 규 영	46	14	32	295-9365-8	
"	4-2-23	화 양 장	여관갑	성수 2가 7-43	조 길 행	30	5	25	464-7551	
"	4-3-24	그 린 힐	"	군 자 322-10	박 봉 자	45	30	15	213-6256-6	
"	4-4-25	서 린 장	"	중 곡 131-9	박 금 순	23	7	16	445-9020	
"	4-5-26	하이눈장	"	성수1가 671-186	조 귀 임	36	13	23	463-2489	
"	4-6-27	신 원 장	"	중곡동 117-4	박 경 신	31	11	20	447-9009	
"	4-7-28	서 라 벌	"	능 동 236-3	문 병 옥	35	12	23	453-1351	
"	4-8-29	이 화 장	"	성수 2가 314-38	박 순 자	33	18	15	464-5041	
"	4-9-30	대 아 장	"	군 자 322-12	추 인 순	32	9	23	245-3194	
"	4-10-31	명 보 장	"	군 자 324-9	정 구 창	20	4	16	212-9736	
"	4-11-32	은 하 장	"	성수 2가 236-103	문 금 철	28	17	11	463-1171	
"	4-12-33	서 린 장	"	송 정 20-3	배 형 준	29	10	19	467-1312	
"	4-13-34	소 라 장	"	군 자 323-18	양 성 립	40	10	30	244-1466	
"	4-14-35	골든파크	"	군 자 322-7	구 경 자	30	10	20	212-8554	
"	4-15-36	금 강 장	"	중 곡 250-4	이 국 희	28	12	16	466-9874	
"	4-16-37	서 립 장	"	중 곡 92-5	최 경 수	22	8	14	445-9434	
"	4-17-38	일 월 장	"	중 곡 554-1	김 진 숙	25	11	14	434-1911	
"	4-18-39	삼 우 장	"	능 동 278-4	김 영 숙	20	8	12	467-0361	
"	4-19-40	초 원 장	"	능 동 236-5	김 철	36	10	26	446-1390	

50-32 제 1233 호

시

모 1985.12.30

지역	번 호	업 체 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성 동	4-20-41	청 운 장	여관갑	능 동 4-11	백 정 자	28	4	24	446-0478	
"	4-21-42	설악파크	"	능 동 131-4	장 권	42	9	33	466-6590	
"	4-22-43	태 화 장	"	능 동 220-6	이 혜 자	25	9	16	447-4200	
"	4-23-44	은 산 장	"	용 답 68-23	신 익 현	41	13	28	246-3908-10	
"	4-24-45	한 일 장	"	구 의 59-1	곽 막 동	22	7	15	446-9789	
"	4-25-46	하이눈장	"	구 의 73-1	황 증 자	40	16	24	453-8973	
"	4-26-47	싸 파 리	"	구 의 54-21	박 용 규	28	12	16	447-2064	
"	4-27-48	대 하 장	"	광 장 241-1	이 영 규	43	8	35	445-6214	
"	4-28-49	미 립 장	"	자 양 220-150	연 근 상	48	24	24	446-7403	
"	4-29-50	오아시스	"	자 양 228-203	정 문 자	31	14	17	452-2949	
"	4-30-51	대 교 장	"	자 양 657-16	유 진 순	24	12	12	445-8951	
"	4-31-52	고 려 장	"	자 양 679-28	문 영 순	22	11	11	452-7400	
"	4-32-53	파크웨이	"	중 폭 131-5	신 민 섭	39	13	26	444-3114	
"	4-33-54	하 양 장	"	구 의 59-4	문 우 덕	21	6	15	447-1235	
"	4-34-55	신 라 장	"	구 의 59-14	이 길 자	23	6	17	445-8089	
"	4-35-56	라 보 장	"	능 동 88-10	김 해 령	10	4	6	467-2162	
지역	번 호	업 체 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동대문	5-1-57	대 유 장	호텔을	장 안동 228-1415	박 중 숙	31	17	14	247-4558-65	
"	5-2-58	서 울 장	여관갑	" 432-3	김 길 동	45	16	29	244-3859	
"	5-3-59	도 고 장	"	" 344-4	박 조	25	10	15	244-0913	
"	5-4-60	백 운 장	"	" 345-10	서 영 권	29	17	12	212-9388	
"	5-5-61	행 운 장	"	" 456-4	백 귀 재	29	11	18	244-3206	
"	5-6-62	아람파크	"	" 456-20	정 인 명	26	5	21	245-2585	
"	5-7-63	명 성 장	"	" 286-7	홍 능 자	25	10	15	248-9456	
"	5-8-64	성 익 장	"	" 315-3	김 초 산	24	11	13	212-8503	

지역	번 호	업 체 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영등포	6-1-65	스파여관	여관갑	영등포동 94-154	박 희 주	21	16	5	676-2945 7972	
강남	7-1-66	신사호텔	호텔갑	신사동 537-10	이 봉 덕	42	8	34	543-5572	
"	7-2-67	하이웨이	여관갑	" 444-1	정 순 환	83	20	63	544-9394	
"	7-3-68	은 하	"	" 467-4	김 원 형	29	14	15	542-2735	
"	7-4-69	동 래 장	"	" 472-5	단 동 일	32	10	22	544-1014	
"	7-5-70	영 동 장	"	" 502-7	김 우 식	23	10	13	542-4335	
"	7-6-71	세 원 장	"	" 505-4	김 태 순	44	19	25	743-7796	
"	7-7-72	강 남	"	" 513	이 중 성	23	7	16	544-0601	
"	7-8-73	삼 화	"	" 527-3	최 전 희	65	36	39	544-2991	
"	7-9-74	남 광 장	"	" 535-12	권 학 근	40	8	32	542-9923	
"	7-10-75	선 사 인	"	" 587-1	황 대 현	80	14	66	541-1848	
"	7-11-76	경 성	"	" 587-6	최 이 범	50	25	25	544-4123	
"	7-12-77	영 진	"	" 614-1	고 사 례	45	20	25	541-1848	
"	7-13-78	도 산 장	"	" 627-17	양 산 군	35	15	20	543-2386	
"	7-14-79	프린세스	"	" 640-1	임 기 석	46	20	26	544-0366	
"	7-15-80	한 정 을	"	" 652-16	서 정 훈	24	8	16	542-6625	
"	7-16-81	영 일 장	갑	" 80-1	음 화 성	36		36	542-0106	
"	7-17-82	라 성 장	"	" 산 83-2	고 정 자	40	20	20	541-2105	
"	7-18-83	한 강 장	호텔을	" 342-3	유 경 원	33	15	18	542-6117	
"	7-19-84	백 제	호텔갑	" 563-37	최 이 범	63	14	49	542-1203	
"	7-20-85	동 권	"	논현동 202-7	박 소 람	51	23	23	566-3071	
"	7-21-86	세 일	"	" 205-9	배 정 수	44	10	34	542-1203	
"	7-22-87	청 원	호텔을	" 232	이 정 자	42	12	30	568-7200	
"	7-23-88	하이랜드	여관갑	" 7-1	김 두 소	55	16	39	541-1250	
"	7-24-89	고 향 장	"	" 56-21	최 남 일	38	19	19	542-1511	
"	7-25-90	녹 원 장	갑	" 91-10	문 석 용	22	17	5	543-7734	

지 역	번 호	업 체 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개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강 남	7-26-91	우 성	여관갑	논현동 118-6	김 우 성	30	13	17	543-8835	
"	7-27-92	영 남 장	"	" 118-7	박영 호	29	24	5	543-5611	
"	7-28-93	미 주	"	" 118-8	김 희 재	30	15	15	542-5178	
"	7-29-94	그 린 장	"	" 192-21	이 순 기	28	14	14	553-4215	
"	7-30-95	영 동 장	"	" 237-9	전 양 호	33	19	14	462-4498	
"	7-31-96	백 운 장	"	경남동 31-7	이 범 재	24	7	17	462-7298	
"	7-32-97	조 아 장	"	" 31-9	김 용 복	21	6	15	542-5664	
"	7-33-98	대 신 장	"	" 68-7	김 진	36	8	28	542-3508	
"	7-34-99	청 운 장	"	" 31-7	이 범 재	24	7	17	542-0106	
"	7-35-100	석 류	호텔을	" 48-3	김 예 식	33	17	16	543-8590	
"	7-36-101	청 하	호텔갑	" 129	전 문 회	62	9	53	542-0181	
"	7-37-102	광 미	"	" 129-5	박 중 미	55	16	39	542-7177	
"	7-38-103	서 림	호텔을	삼성동 37-16	김 영 태	36	8	28	546-2271	
"	7-39-104	청 아	호텔갑	" 114-11	조 영 근	41	20	21	562-9121-3	
"	7-40-105	도 고	"	" 116-1	김 현 순	40	15	25	557-1496	
"	7-41-106	금 성 호텔	"	" 143-27	주 명 암	40	9	31	568-7231	
"	7-42-107	미 도 장	갑	" 37-19	문 일 화	35	12	23	545-1945	
"	7-43-108	삼 성 장	"	" 45-10	홍 중 용	57	38	19	546-0225	
"	7-44-109	경 원 장	"	" 99-11	이 병 관	30	11	19	546-7251	
"	7-45-110	강 변 장	"	" 100-3	양 재 배	22	8	14	545-9981	
"	7-46-111	경 기 장	"	" 110-2	김 성 환	41	15	26	545-9944	
"	7-47-112	석 울 장	"	" 141-6	김 지 환	39	10	29	562-7131	
"	7-48-113	성 흥 장	"	" 141-7	황 정 수	23	10	13	566-8551	
"	7-49-114	수 정	"	" 141-9	조 병 진	30	15	15	566-8045	
"	7-50-115	대 호 장	"	" 141-21	권 명 환	45	24	21	567-2382	
"	7-51-116	화 흥 장	"	" 143-21	김 자 현	24	12	12	557-2446	
"	7-52-117	대 원 장	"	" 143-32	김 봉 수	28	7	21	556-2958	
"	7-53-118	예 성	"	" 143-33	김 영 애	27	9	18	567-7813	
"	7-54-119	삼 정 장	"	" 144-12	이 철 중	42	20	22	555-8188	
"	7-55-120	산 수 장	호텔을	역삼동 677-11	정 성 화	37	18	19	553-2471-4	

지 역	번 호	업 체 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강 남	7-56-121	청 우 장	호텔갑	역삼동 677-11	정 성 화	80	32	48	562-0171	
"	7-57-122	석 진 장	"	" 603-5	조 남 식	59	17	42	562-5191	
"	7-58-123	우 립 장	"	" 603-6	홍 기 식	38	10	28	567-9131	
"	7-59-124	석 주	"	" 605-17	김 진 명	60	10	50	562-2158	
"	7-60-125	금 강 장	"	" 606-18	장 병 호	45	18	27	555-9502	
"	7-61-126	희 나 장	"	" 606-28	남 정 현	28	22	16	556-4084	
"	7-62-127	유 선 장	"	" 628-11	최 옥 현	31	17	14	555-1983	
"	7-63-128	대 신 장	"	" 646	김 정 숙	30	8	22	568-2128	
"	7-64-129	대 영 장	"	" 649-9	박 귀 호	20	20		557-0110	
"	7-65-130	혜 전 장	"	" 649-75	강 영 택	26	13	13	556-1086	
"	7-66-131	황 금 장	"	" 651-2	정 영 애	52	22	30	557-6240	
"	7-67-132	이 화 장	"	" 652-3	오 화 순	48	18	30	557-2277	
"	7-68-133	파라다이스	"	" 659	이 관 혁	32	15	17	562-9082	
"	7-69-134	수 원 장	"	" 659-7	서 월 자	26	13	13	562-1134	
"	7-70-135	청 운 장	을	" 677-4	이 수 남	27	10	17	567-5766	
"	7-71-136	목 마 장	갑	" 677-16	전 능 휘	32	14	18	566-9542	
"	7-72-137	제 일 장	"	" 678-4	정 형 숙	26	8	18	557-5004	
"	7-73-138	백 화 장	"	" 678-6	황 옥 자	31	14	17	555-6800	
"	7-74-139	귀 빈 장	"	" 678-8	박 정 원	27	9	18	555-0303	
"	7-75-140	무 조 장	"	" 678-16	오 영 택	26	8	18	562-2720	
"	7-76-141	석 화 장	"	" 678-19	오 경 자	29	14	15	557-3888	
"	7-77-142	미 립 장	"	" 678-20	구 철 본	21	8	13	567-3666	
"	7-78-143	초원여관	"	" 678-29	안 동 훈	21	7	14	557-2182	
"	7-79-144	송 원 장	"	" 678-30	최 금 택	21	4	17	557-2182	
"	7-80-145	동 립 장	"	" 678-32	이 종 오	23	9	14	567-4713	
"	7-81-146	신 일 장	"	" 678-26	신 중 협	25	10	15	567-6268	
"	7-82-147	산 천 장	"	" 678-25	유 숙 자	19	10	9	555-4593	
"	7-83-148	수 립 장	"	" 700	박 순 초	34	12	22	562-8161	
"	7-84-149	대 신 장	"	" 700-27	신 영 옥	23	10	13	568-8616	

50-36 제 1233 호 시

보 1985. 12. 30

지 역	번 호	업 체 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강 남	7- 85-150	낙 원 장	갑	역삼동 702-29	박 승 규	20	10	10	561-8101	
"	7- 86-151	영 신 장	"	" 703-1	김 기 만	18	6	12	555-7025	
"	7- 87-152	태 화 장	"	" 707-11	박 춘 식	33	17	16	552-9006	
"	7- 88-153	신 선 장	"	" 707-18	배 정 환	26	13	13	566-7056	
"	7- 89-154	목 화 장	"	" 718-11	양 금 열	22	9	13	568-6193	
"	7- 90-155	유 립 장	"	" 718-14	김 숙 도	22	11	11	566-5780	
"	7- 91-156	대 립 장	"	" 718-15	정 종 길	22	7	15	555-0514	
"	7- 92-157	원 회 장	"	" 720-12	편 금 순	30	10	20	568-1035	
"	7- 93-158	역 사 장	"	" 720-17	구 재 완	18	4	14	568-1188	
"	7- 94-159	은 지	"	" 776-19	이 명 진	45	14	31	555-0343	
"	7- 95-160	정 우	"	" 789-11	홍 삼 식	40	14	26	566-3236	
"	7- 96-161	신 선 장	"	" 797-21	나 응 종	39	13	26	567-6796	
"	7- 97-162	삼 일	"	" 808-1	윤 순 자	24	14	10	563-4752	
"	7- 98-163	삼 우 장	"	" 819-3	이 화 강	27	9	18	566-1798	
"	7- 99-164	경 원	"	" 819-7	민 태 근	20	8	12	566-3391	
"	7-100-165	금 호	"	" 819-8	김 기 석	30	10	20	555-4106	
"	7-101-166	유 진	"	" 819-9	조 성 분	34	16	18	566-5149	
"	7-102-167	동 일 장	"	" 825-1	한 승 회	39	14	25	563-1463	
"	7-103-168	금 수 장	"	" 825-3	문 옥 자	21	5	16	563-8564	
"	7-104-169	극 동	"	" 825-31	정 숙 택	27	8	19	567-7618	
"	7-105-170	실 로 압	"	" 826-23	한 길 설	27	15	12	555-0223	
"	7-106-171	동 경 장	"	" 826-45	김 부 철	29	12	17	566-7514	
"	7-107-172	궁 전	"	" 831-26	정 호 선	34	8	26	567-7637	
"	7-108-173	주 화	호텔갑	서초동 24-1	곽 성 식	48	18	30	562-0156	
"	7-109-174	서 호 호텔	"	" 32-2	김 대 회	40	12	28	567-8320	
"	7-110-175	뉴서울호텔	갑	" 71구역 3-4	신 화 성	42	20	22	462-9802	
"	7-111-176	신 라 장	"	" 12-4	윤 효 진	33	12	21	557-8776	
"	7-112-177	용 진	"	" 27-2	최 재 경	42	20	22	566-9165	
"	7-113-178	우 성 장	"	" 33-5	김 문 자	29	15	14	556-0008	

지 역	번 호	업 체 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강 남	7-114-179	대 원 장	갑	서초동 53-6	최종을	25	10	15	552-1329	
"	7-115-180	은 도	"	" 75-8	이현수	26	2	24	546-4645	
"	7-116-181	유 성 장	"	" 79-1	박춘남	30	15	15	567-4031	
"	7-117-182	터 미 널	호텔을	" 461-7	이환성	43	13	30	582-9165	
"	7-118-183	서 초	여관을	" 685-1	박원분	28	7	21	583-0174	
"	7-119-184	일 선 장	갑	" 798	김승호	24	12	12	582-4111	
"	7-120-185	목 화 장	"	" 798-2	박천이	28	12	16	583-2617	
"	7-121-186	대 립 장	"	" 808-2	이춘재	26	6	20	584-3146	
"	7-122-187	터 미 널	호텔을	반포동 170-3	박기웅	28	12	16	562-7610	
"	7-123-188	장 미 장	갑	서초동 273-70	이덕출	24	12	12	584-5906	
"	7-124-189	수 원 장	"	" 278-84	원정자	27	20	7	585-5672	
"	7-125-190	에 덴 장	"	반포동 562-3	김종구	20	7	13	533-1629	
"	7-126-191	오 스 카	"	" 563-1	이용우	29	7	22	599-3155	
"	7-127-192	서 린 장	"	도곡동 542-2	김정호	57	20	37	567-2904	
"	7-128-193	명 성 장	"	대치동 891-25	주경순	34	20	14	568-0607	
"	7-129-194	호 수 장	을	" 891-53	임정열	16	16		555-4269	
"	7-130-195	레인보우	호텔을	방배동 765-4	황왕순	36	18	18	591-5401	
"	7-131-196	유 성 장	갑	" 751-8	김녹수	31	10	21	593-7790	
"	7-132-197	행 운 장	을	" 752-14	이재영	19	3	16	533-5771	
"	7-133-198	대 립 장	"	" 752-18	장영호	14	5	9	533-3507	
"	7-134-199	삼 호 장	"	" 752-21	박중철	19	2	17	599-8181	
"	7-135-200	청 수 장	갑	" 752-39	변분규	25	9	16	591-0770	
"	7-136-201	서 울 장	"	" 755-2	김영택	33	10	23	532-4334	
"	7-137-202	정 운 장	"	" 755-4	김영재	36	12	24	592-2868	
"	7-138-203	덕 수 장	"	" 768-17	강충진	39	20	19	599-7262	
"	7-139-204	신 일 장	"	" 769-4	이택주	31	16	15	544-1397	
"	7-140-205	하 양 장	"	" 769-10	윤명운	20	4	16	593-4192	
"	7-141-206	청 아 장	"	" 792-18	자석호	30	9	21	533-3663	

지역	번호	업체명	등급	소재지	영업자	개 실			전화	비고
						계	한실	양실		
강 남	7-142-207	라 성 장	갑	방배동 793-19	강 익 군	21	5	16	533-4705	
"	7-143-208	황 금 장	"	" 797-1	윤 수 득	39	9	30	533-3421	
"	7-144-209	한 일 장	갑	방배동 810-2	이 기 성	33	12	21	599-8151	
"	7-145-210	금 성 장	"	" 811-16	이 정 천	34	16	18	599-8814	
"	7-146-211	방 배 장	"	" 812-10	이 봉 수	27		27	533-1571	
"	7-147-212	보 성 장	"	" 812-25	최 병 옥	20	5	15	599-1994	
"	7-148-213	세 원 장	"	" 818-22	이 정 임	20	10	10	593-4221	
"	7-149-214	강 남 장	"	" 818-33	김 학 중	28	12	16	532-0011	
"	7-150-215	선 화 장	을	" 898-5	이 재 경	16	4	12	584-2207	
"	7-151-216	정 산 장	갑	" 901-2	이 석 주	27	8	19	582-0767	
"	7-152-217	장수여관	"	" 924-12	차 미 담	20	7	13	583-2257	
"	7-153-218	조 화 장	을	역삼동 718-28	김 관 식	16	4	12	566-9746	
"	7-154-219	성심여관	"	" 718-29	박 태 원	16	11	5	567-8680	
"	7-155-220	로 타 리	"	" 750-9	조 자 경	18		18	593-7262	
"	7-156-221	정 수 장	갑	" 647-13	김 명 수	31	17	14	557-6257	
"	7-157-222	화전호텔	갑	삼성동 146-4	최 상 순	51	10	41	552-5106	
"	7-158-223	강 변 장	갑	신사동 505-9	이 봉 근	23	12	11	542-2895	
"	7-159-224	은 성 을		역삼동 826-35	김 현 정	18	10	8	568-0377	
"	8-1-225	금 복 장	갑	성 내 70-1	김 봉 립	35	8	27	478-8052	
"	8-2-226	청 운 장	"	" 3-30	안 완 석	45	19	26	478-4308	
"	8-3-227	백 운 장	"	" 416-20	최 연 길	24	10	14	487-8209	
"	8-4-228	동 원 장	"	" 417-5	김 기 상	34	15	19	484-2871	
"	8-5-229	별 나 라	"	" 429	정 복 선	28	12	16	482-2043	
"	8-6-230	백 재 장	"	길 동 367-5	정 광 식	24	10	14	478-8074	
"	8-7-231	장 군	"	" 386-4	강 진 규	28	8	20	472-8834-5	
"	8-8-232	영 빈 장	"	" 412-2	송명중외1	28	10	18	476-8087	

지역	번 호	업체명	등급	소 재 지	영업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강 동	8-9-233	비 버 리 갑		길 동 447.446-2	차 광 덕	50	6	44	478-2825	
"	8-10-234	이 화 장 "		" 450-1	백 내 현	21	11	10	476-3650	
"	8-11-235	진고개장 "		" 451	김 양 희	22	15	7	477-3925	
"	8-12-236	프 린 스 "		" 347-29	나 춘 해	30	7	23	484-6767	
"	8-13-237	산성빌라 "		둔촌동 144-4	김 덕 년	20	6	14	487-4015	
"	8-14-238	왕 천 장 "		방이산 47-15	김 정 자	24	12	12	415-0466	
"	8-15-239	신 천 장 "		신 천 1-36	문 춘 석	33	13	20	412-1086	
"	8-16-240	신 라 장 "		암사동 462-11	이 경 순	22	8	14	482-5484	
"	8-17-241	바 우 장 "		" 501-10	최 정 자	21	4	17	484-6641	
"	8-18-242	나 루 장 "		" 501-24	임 정 자	22	6	16	478-2396	
"	8-19-243	국 일 장 "		천 호 287-28	이 해	20	5	15	482-6614	
"	8-20-244	청 기 와 "		천 호 315-29	이 종 배	31	10	21	476-1328	
"	8-21-245	올림프스 "		" 323-5	서 정 일	40	20	20	484-0357	
"	8-22-246	태 평 장 "		" 331-9	김 태 천	31	8	23	482-2983	
"	8-23-247	대 원 장 "		" 354-5	경 석 순	29	9	20	476-0925	
"	8-24-248	로 알 장 "		" 430-13	하 건 호	22	6	16	472-6700	
"	8-25-249	청 아 장 "		" 430-8	김 결 재	23	11	12	478-2135	
"	8-26-250	서 원 장 "		" 430-13	안 옥 순	22	4	18	476-0611	
"	8-27-251	뉴스타장 "		" 430-14	유 응 열	24	8	16	476-1650	
"	8-28-252	대 천 장 "		" 432-10	김 정 배	35	10	25	477-1455	
"	8-29-253	석 류 장 "		성 내 59-3	한 경 희	38	18	20	477-5710	
"	8-30-254	뉴스타장 "		석 존 24	원종찬외1	39	13	26	415-5561	
"	8-31-255	호 수 장 "		" 183	원종호외1	43	23	20	412-5550	
"	8-32-256	잠 실 파크 "		삼 전 9-19	유 광 식	30	9	21	414-7781	
"	8-33-257	코 리 아 장 "		" 81-36	김 삼 수	39	11	18	415-5572	
"	8-34-258	한 일 장 "		" 77-186	정 하 근	25	5	20	417-4833	
"	8-35-259	서 울 장 "		잠 실 193-1	노기환외1	30	9	21	415-0550	
"	8-36-260	올림피아장 "		" 196-22	김옥희외1	30	12	18	414-9544	
"	8-37-261	산 장 "		" 208-479	염 은 산	56	26	30	414-3412	

지역	번 호	업체명	등급	소재지	영업자	객 실			전 화	비고
						계	한실	양실		
강 동	8-38-262	대 왕 장	갑	천 호 324-39	강 태 윤	50	8	22	478-4464	
"	8-39-263	유 명 장	"	" 325-10	이 창 현	22	7	15	484-7231	
"	8-40-264	대 호 장	"	" 327	김 성 진	24	12	12	478-0378	
"	8-41-265	진 현 장	"	" 410-186	김 창 순	21	11	10	485-3676	
"	8-42-266	고 원 장	"	성 내 74-10	고 종 기	24	14	10	478-9935	
"	8-43-267	초 원 장	"	" 199-7	한 정 원	26	12	14	471-1838	
"	8-44-268	삼 호 장	"	길 동 395-2	안 병 숙	29	14	15	477-6361	
"	8-45-269	한 립 장	"	" 414-1	주 성 일	42	16	26	478-7859	
"	8-46-270	뉴금성장	"	" 415-16	김 영 식	35	19	16	478-7669	
"	8-47-271	대 원 장	"	석 촌 15-3.4	장 명 자	25	15	10	424-1144	
"	8-48-272	덕 우 장	"	삼 전 22-11.8	임 동 찬	29	6	23	415-8022	
"	8-49-273	대 양	"	잠 실 175	허 명 자	36	24	12	414-5600	
"	8-50-274	마 마 장	"	명일동 334-11	임 동 회	30	7	23	470-0013	
"	8-51-275	부 암 장	"	천 호 166-53	김 현 자	27	13	14	471-2071	
"	8-52-276	청 수 장	여관갑	천 호 328	홍 인 필	21	4	17	485-1897	
"	8-53-277	동 우 장	"	성 내 58-7	노 선 우	20	10	10	478-3173	
"	8-54-278	스 타 장	"	" 59-5	윤 병 정	20	8	12	476-4955	
"	8-55-279	목 화 장	"	" 59-5	복 현 수	23	10	13	483-7676	
"	8-56-280	청 립 장	"	" 226-12	송창권외	20	8	12	487-2632	
"	8-57-281	대 우 장	"	길 동 384-6	함 진 복	20	2	18	476-1323	
"	8-58-282	잠 실 장	"	잠실 250-5.6.10	한 경 순	32	11	21	415-3111	
"	8-59-283	태 성 장	"	" 252-11	유부수자	26	16	10	424-3700	
"	8-60-284	거 목 장	"	" 336-41	김 용 기	24	6	18	424-3700	
"	8-61-285	삼 우 장	"	삼 정 131-2.9	강 무 회	42	15	27	414-0266	
"	8-62-286	성 보 장	"	성 내 58-9	김 응 일	29	4	25	487-7271	
"	8-63-287	제 일 장	호텔을	길 동 388	이 석 인	37	11	26	477-7115	

'86. '88 대회용 후보여관 현황

지 역	번호	업체명	등 급	소 재 지	영업자	객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중 로	1	계 성	호텔을	낙원동 143	강태권	28	10	18	765-3681	
중 구	2	동 방	여관갑	을지로 2 가 148-17	이혜숙	30	20	10	274-59.1	
성 동	3	금 강 산	"	군자동 322-8	홍영유	35	10	25	213-0360	
"	4	느티나무	"	" 324-13	최혜자	30	10	20	212-6163	
"	5	정 원 장	"	구의동 201-3	김안자	20	7	13	452-2915	
동대문	6	온천장	"	장안동 455-11	심재수	32	14	18	245-1867	
"	7	금 호 장	"	" 433-2	박두성	20	6	14	244-6162	
"	8	하 안 장	"	" 430-7	김진교	26	9	17	246-3399	
"	9	이 화 장	여관을	" 211-10	임무자	17	8	9	245-5013	
강 남	10	청 수 장	여관갑	논현동 116	오인환	28	11	17	544-9580	
"	11	강 남	여관을	" 144	최성분	19	9	10	553-4315	
"	12	유 정	여관갑	청담동 40-2	서봉애	21	5	16	542-5734	
"	13	학 장	"	" 144-21	하분곤	34	12	22	542-8914	
"	14	성 산	여관을	삼성동 49-9	송순자	18	8	10	515-9057	
"	15	삼 아 장	"	" 114-9	김덕수	16	5	11	562-6020	
"	16	봉 원	"	" 146	장경현	18	10	8	562-7850	
"	17	대 우 장	"	방배동 752-18	정인순	18	2	16	592-0233	
"	18	금 강 장	"	" 793-4	김재수	15	5	10	533-1583	
"	19	귀 빈	"	" 2270-2	김광성	15	5	10	532-8775	
"	20	우 림	"	논현동 113-18	최정희	14	8	6	544-1179	
"	21	유 진	"	" 201-6	조병기	17	8	9	568-2129	
"	22	개 성	여관갑	삼성동 142-4	송은혜	25	13	12	566-1125	
"	23	남서울	여관을	논현동 242-24	장영자	12	12		545-9701	
"	24	대 교	여관갑	서초동 69-2	이영분	20	10	10	568-1158	
"	25	송원여관	여관을	청담동 53	고순희	14	4	10	542-4538	
"	26	유 림	"	역삼동 826-5	박설자	16	3	13	566-5935	
강 동	27	뉴신천장	여관갑	잠실동 242	김영팔	24	14	10	422-3814	
"	28	황제장	"	천호동 338-16	이금주	22	7	15	477-5593	

지 역	번호	업체명	등 급	소 재 지	영 업 자	개 실			전 화	비 고
						계	한실	양실		
강 동	29	금 강 장	여관갑	천호동 357-11	신순균	20	12	8	484-9332	
"	30	남 촌 장	"	길 동 412-14	계해수	29	14	15	482-5407	
"	31	삼 전 장	"	삼전동 38-b	백광흠	23	8	15	413-5835	
"	32	경 춘 장	"	암사동 462-9	김옥희	22	6	16	482-5546	
"	33	호 수 장	"	천호동 298	김홍기	22	12	10	470-1266	
"	34	약 수 장	"	길 동 413-8	유복순	23	13	10	473-9835	

◎ 서울특별시공고제 781 호

신문로구역 제 2 지구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71 호 (80.3.7) 및 서울시 고시제 571 호 (84.9.21) 로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되어, 서울시고시제 79 호 (85.2.7) 로 제 3 개발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봉록 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동 시행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

1985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명칭 : 신문로제 2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중구태평로 1 가 64-2, 64-3, -4, -7, -8, -9, -12, -14, 62-13, 66, 67-1, -5, -6, 68, 69, 70, 71, 71-1, 158-1, 종로구세종로 211-1, 213-2, 종로구신문로 1 가 150, 151 (제 23 필지)

- 시행면적 : 1,980.90㎡
(공공용지 : 366.50㎡)

다. 사업시행자 : 중구태평로 1 가 64-8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 봉 록

라. 건축개요

- 대지면적 : 1,614.40㎡
- 건축면적 : 654.48㎡
- 건축연면적 : 19,895.27㎡
- 층 수 : 20 / 5
- 주 용 도 : 업무시설및판매시설

마. 공람내용 :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 (별첨)

바. 공람기간 : 85.12.31-86.1.29

(30 일간)

사.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재개발과 (731-6357)

아.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3년

◎ 서울특별시공고 제 782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사업시행중에 있는 가락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코저 동법 제 33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제외변경 도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간 보인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한다.

198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위치 : 강동구가락동, 방이동, 오금동, 거여동, 문정동, 장지동, 마천동, 이동 각일부

* 변경도서 : 생략

구 청 공 고

◎ 강서구청공고제 80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행정처분공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 1 항 규정에 의거 아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5년 12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구

음

지정 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사 항	조치내역	비 고
107	성심설비	신정동 955-7	김 종 오	무단상소이전	지정취소	법30조1항
165	영일종합설비	신월동 90-8	정 학 모	"	"	"
55	태형설비	화곡동 348-10	김 홍 곤	시공정지기간중 기능사미채용	"	"
57	삼진기공	화곡동 897-17	김 유 남	"	"	"

50-44 제 1233 호

시

보 1985.12.30

지정 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 반 사 항	조치내역	비 고
128	금화보일러	등촌동 485-14	윤 중 한	시공정지기간중 기능사 미채용	지정취소	법30조1항
173	청신기계설비	목동 748-2	강 영 부	"	"	"
191	우당건설	연창동 261-4	최 용	시공기능사 미채용	시공정지 2월 '85.12. 24-'86. 2.24	"

사 령

◎ 1986 년 1 월 1 일자

령제 47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순 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충남 홍성군 홍성읍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

◎ 1985 년 12 월 28 일자

령제 47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백 재 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보광동수원지사무소	지방행정주사
석 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월" 에 처함	강남구위생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송 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 에 처함	보광동수원지사무소	지방전기기사
손 순 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 에 처함	구의수원지사무소	지방화공기사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신 등 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구로구 환경과	지방보전기사
전 창 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서대문병원	지방약무사
이 휘 상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2 월”에 처함	관악구보건소	지방약무사보
강 철 원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2 월”에 처함	동대문보건소	“
신 태 균	불문 (경고) (서울특별시 제 1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강동구토목과	지방토목기사
령제 47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 용 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해임”에 처함	세종문화회관	지방행정주사보
◎ 1985 년 12 월 30 일자			
령제 477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 창 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동대문구민방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경 영	불문 (경고) (서울특별시 제 1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새마을지도과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광수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연료과	지방행정사무관
최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성동구 환경과	지방화공기좌
지우창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동작구보건소	지방의무기좌
조명환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성북구수도공사와	지방토목기좌
강순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북부수도관리사업소	"
령제 478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제철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5.10.24 자 해임처분을 동일자로 정직 1월로 변경처분함 선유수원지 사무소 근무를 명함	강남구	지방토목기사
주수일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5.10.24 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종로구	지방건축기사
조용희	"	중 구	지방건축기사
이종구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5.10.31 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서부건설 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이남구	"	동대문구	지방토목기원
박성규	"	서대문구	지방토목기원보

령제 479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박 형 평	행정서기	등대문구산업과	지방행정서기
오 세 택	지방행정주사보	도봉구위생과	행정주사보
장 지 영	지방행정서기	• 번 1 동	행정서기
백 용 운	행정주사보	• 민방위과	지방행정주사보
권 병 덕	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
신 태 빈	•	은평구산업과	•
최 인 협	지방행정주사보	마포구산업과	행정주사보
강 환 중	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주사보
하 태 연	행정서기	강동구산업과	지방행정서기
김 회 수	행정주사보	농축과	지방행정주사보
◎ 1986 년 1 월 일자			
령제 480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 영 환	종합건설본부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보
한 선 회	도시계획과	급수과	•
◎ 1985 년 12 월 30 일자			
령제 481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하 태 선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성동구	지방별정직 7 급상당
◎ 1985 년 12 월 31 일자			
령제 485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이 영 범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 7 조 제 2 항에 의거 '85.12.31 자 그 직을 면함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	지방별정직 7 급상당
박 복 선	•	부녀복지관	지방별정직 8 급상당

명제 486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종운	상하수국 업무과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박대현	"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김현준	"	성북구	"
박승일	"	동대문구	"
박영일	"	은평구	지방행정서기
명제 487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동엽	지방공무원법 제 66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김차봉	"	성동구	"
문영철	"	동대문구	"
이인호	"	성동구	"
이춘우	"	서대문구	"
서정호	"	마포구	"
염명산	"	북부수도관리사업소	"
이광섭	"	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이준기	"	성동구	"
최종원	"	동대문구	"
유한영	"	동작구	"
조운숙	"	동대문보건소	지방간호기사
황찬규	"	시립운동장	지방행정주사
김영제	"	서대문구	지방보건기사
도진건	"	마포구	지방기계장 (기능 7 등급)
고원석	"	내무국 총무과	지방조무원 (기능 9 등급)
명제 492 호			
© 1985 년 12 월 28 일자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백명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감사원	감사주사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용 윤한업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감사원 진출을 명함 감사원 진출을 명함	동대문구세무 1과 강동구세무 2과	지방행정주사 "
◎ 1985년 12월 24일자 경제 494 호 이사관 김영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85년 12월 30일자 경제 49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서숙자	인천직할시 진출명함	영등포병원	지방간호기원
◎ 1986년 1월 1일자 경제 496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용대	올림픽토목담당관 파견 ('86.1.1-'86.6.30)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보
연두성	올림픽건축담당관 파견 ('86.1.1-'86.6.30)	"	지방건축기사보
전석기	"	"	"
정철수	"	"	"
현병석	"	"	지방건축기원
최진복	"	"	"
장택상	올림픽토목담당관 파견 ('86.1.1- 86.6.30)	"	지방농림기원보
오춘섭	"	"	"
박현식	올림픽건축담당관 파견 ('86.1.1-'86.6.30)	기술심사담당관	지방건축기사
장정희	성북구보건소 파견 ('86.1.1-'86.6.30)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최수겸	영등포보건소 파견	서대문병원	"

50-50 제 1233 호 시 보 1985.12.30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서찬규	('86.1.1 - '86.6.30) 구획정리과 파견	동대문구	지방지적지원
이병화	('86.1.1 - '86.6.30) "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보
◎ 1985년 12월 31일자 형제 500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신현삼	지방공무원법 제 66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12.31 일 그직을 면함	아동병원	지방의무부기감
형제 50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조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 에 처함	동대문구시민국장	지방서기관
최경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보광동수원지 사무소장	지방토목기점
서울특별시			